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등)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안 제4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관찰관, 「아동복지법」 제45조”를 “보호관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으로, “보호를 우선적으로”를 “보호 및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고서·의견서 제출”을 “보고서·의견서 제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상황 조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상황 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령”을 “법령 및 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 한다.

5.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관찰관”을 “보호관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11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8호, 제21호 및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7호)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8호)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로, “제10조”를 “제10조, 제23조, 제25조”로 한다.

17.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19.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료요청, 면담 및 질문에 관한 사무

20.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

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에 한한다)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집행상황
3. 보호관찰 등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사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호	150	300	5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 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 람	법 제63조 제1항제3호	150	300	5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5호	100	300	5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6호	150	30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u>피해아동</u> 보호의 원칙) 검 사, 사법경찰관리, <u>보호관찰관</u> , <u>「아동복지법」</u>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 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 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u>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 적으로</u>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u>피해아동등</u> 보호의 원칙) - ----- <u>보호관찰</u> <u>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u> <u>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u> <u>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u> <u>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u> <u>(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u> <u>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u> <u>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u> <u>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u> <u>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u> <u>조</u> ----- ----- ----- ----- ----- ----- <u>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u> <u>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u> <u>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u> <u>한다)----- 보호 및 피해아동</u> <u>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u> ----- ----- ----.

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 피해아동등 -----

--- 피해아동등 -----

피해아동등 -----
-----.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

----- 피해아동등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

----- 보고서·의견서 제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상황 조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상황 조사 -----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의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

-----.

1. (현행과 같음)

2. ----- 법령 및 제도

3. 4. (현행과 같음)

5.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6.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보호관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2. (생략)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 ~ 7. (생략)

8.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4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9. ~ 16. (생략)

<신설>

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11조의2-----

4. ~ 7. (현행과 같음)

8. -----
--- 제47조제5항 -----

9. ~ 16. (현행과 같음)

17.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17.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18.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수사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관한 사무

18.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

19.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자료 요청, 면담 및 질문에 관한 사무

20.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21. ----- 피해아동 등 -----

22. ----- 제21호 -----

--

②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제10조, 제23조, 제25조 ----

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신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에 한한다)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집행상황
3. 보호관찰 등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사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연 락 처	(02) 2110 - 3648